유가증권 시장에서의 투자자의 권리 및 합법적 이익 보호에 관한 연방법률?

이 법은 유가증권시장에서 투자자의 권리 및 합법적 이익을 국가적 및 사회적으로 보호하고 유가증권시장에서의 위법 행위로 투자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고 그 밖의 형태로 배상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. 유가증권시장을 담당하는 연방 집행권력기관(역주: 우리나라의 ‘ 행정부’에 해당함) 유가증권 시장에서 행해졌거나 발생할 수 있는 법률 위반에 관하여 투자자에게 통지 및 경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와 관련한 정보를 관보에 공지하고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?운영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유가증권시장의 전문 참여자(역주:우리나라의 ‘ 증권업자’에 해당함)의 자율규제기관은 전문 참여자에 대하여 감독을 실시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. 또한 이 법은 투자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투자자권리보호국가프로그램의 실행을 목적으로 비영리 조직체로서의 연방보상기금을 설립하도록 하고 있다. 이 법은 총 20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1999년 3월 5일 제정, 2007년 12월 6일 15차 개정되었다.